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47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10. 6.	회부연월일	2022.10. 6.

## 1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인상하고,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‘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“20만원” 에서 “30만원” 으로 변경 (안 제4조 제2호)
- 수급자격에 부합한 참전유공자에게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변경(안 제5조 제1항)

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인상하고,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48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10. 6.	회부연월일	2022.10. 6.

## 1. 제안이유

- 보훈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,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 추가(안 제6조제7호)

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,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 및 제19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